

의안번호	2213582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5.12.10.
추계번호	25C5614

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11조 (지역의사에 대한 지원)	-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, 경력개발 지원, 직무교육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- 지역의사의 보수는 소속 의료기관이 그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2항) - 시·도지사는 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해당 시·도 내의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	의무규정
2	안 제13조 (학비등의 지원)	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학비등)을 지원하여야 함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11조 (지역의사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3조 (학비등의 지원)	

2. 상세 사유

□ 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(안 제11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사에 대하여 주거지원, 경력개발 지원, 직무교육 제공 등의 지원을 할 경우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, 이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량적·선언적 규정이자 현시점에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□ 학비 등의 지원(안 제13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‘지역의사입학전형’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이며, ‘지역의사’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(동법 제2조)
- 제정안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학비등을 지급할 대상과 ②지급 범위 및 ③지불 방안 등의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제정안은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먼저, 제정안 제5조는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이 입학할 학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자 수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, 정부는 2024년 2월 발표한 「필수의료 정책패키지」(24.02.01.)에서 “지역필수의사제” 도입 추진계획을 밝히고 2025년 4월 ‘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’을 수행할 4개 지자체를 선정함¹⁾

1) 보건복지부는 총 4개 지방자치단체(강원도, 경상남도, 전라남도, 제주도)를 선정하였으며, 2025년 기준 13억 5,200만원 예산을 배정함. 지역별 주요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음

(강원)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(RISE) 연계(연구활동 장려금,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) 월 100만 원~200만 원 지역상품권,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
(경남) 지역필수의사 정착금(월 100만 원), 전입가족 환영지원금(1인 200만 원, 최대 800만 원), 자녀 양육지원금(1인 월 50만 원,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) 등
(전남) 교육부 RISE 연계(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, 연수·연구비 지원), 생활 인프라(문화·여가시설 할인 등) 지원 등
(제주) 도지사-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, 의료기관별 숙소지

- 지역필수의사제는 전공의의 장학금·수련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지역의사 지원과 유사하지만, 복무기간을 법으로 정한 제정안과 달리 복무기간을 정부와 의사 간의 계약으로 진행하여 강제성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
- 또한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와 구체적인 지급 내용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한편, 보건복지부는 ‘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’ 사업을 통해 장학생 120명에 대해 연간 장학금(평균 1,730만원)의 50%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 10억 2,000만원을 배정함(2025년 기준)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